

2020년도 제1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8. 6.(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심장섭(분과위원장 대행), 김연희,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5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217건(안전번호 제2020-89329호~9042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8932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21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심장섭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62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5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장섭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여 사전 검토를 위해 이메일로 보내드렸음.
전차회의록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에 민원인의 신고 내용, 민원인의 회사명, 제조사명, 7쪽~8쪽에 사이트명, 11쪽에 민원인의 회사명, 사이트명, 12쪽에 사이트명, 16쪽에 저작물명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민원내용, 민원인의 회사명, 제조사명, 사이트명,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위원, C 위원: 같은 생각임.
- 심장섭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인의 신고 내용,

민원인의 회사명, 제조사명, 사이트명, 저작물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넷플릭스',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영국 Channel4', '미국 FOX', '미국 NBC', '일본 NTV', '미국 HBO', '일본 NHK', '월트 디즈니 픽처스', '소니픽처스코리아', '유니버설 픽처스', '중국 youku', '(주)제이앤씨미디어그룹', 'tvN', 'Adobe Systems Inc.', '롯데엔터테인먼트', '(주)라운컴퍼니플러스', 'Comedy TV', '(주)싸이더스', '(주)이수 C&E', 'OCN', 'CGV아트하우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 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A 위원, B 위원: 해당 없음.

- 심장섭 분과위원장 대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이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심장섭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89329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9330호~9042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영화 '결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89429호는 밴드에서 영화 '결백'을 MP4 파일로 제공한 사안임. 신혜선, 배종옥 배우가 출연한 영화로 누적관객이 86만 명을 넘음. 2020. 6. 10. 개봉하였으며, '네이버 시리즈on'에서 구매하는 경우 7,000원에 이용가능함. 밴드명은 '▶▶▶▶'이고, 멤버 수는 3명임.
- C 위원: 친구와 밴드를 만든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모니터링 되었다는 의미는 밴

드 멤버가 아니라도 누구나 검색하여 해당 저작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고 있음.

- A 위원: 해당 밴드는 공개형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초대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밴드를 비공개 내지 폐쇄형 밴드라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보호원이 모니터링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B 위원: 해당 밴드 왼쪽에 보시면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밴드 소개와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민원인의 신고 없이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하여 심의를 요청한 안건들은 모두 개방형 밴드라고 이해하시면 됨. 설령 멤버 수가 1명내지 2명이라고 하더라도 밴드 검색창에서 해당 불법 복제물이 쉽게 검색되기 때문에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이라는 저작권법상 ‘전송’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오른쪽을 보시면 ‘▶▶▶’, ‘▶▶▶’, ‘▶▶▶ ▶▶▶’ 등 최신영화들이 제공된 흔적이 남아 있음.

(영화 ‘#살아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9504호는 영화 ‘#살아있다’를 웹하드에서 191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6. 8. 개봉하였으며, 누적관객이 190만 명을 넘음. ‘네이

버 시리즈on'에서 대여하는 경우 10,000원, 구매하는 경우 14,900원에 이용 가능함.

(영화 '밤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9515호는 영화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화 '밤첼'을 199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폭스 뉴스 채널의 여직원과 창립자 로저 에일스 관련 사건인 폭스 뉴스의 성 스캔들을 각색한 영화임. 2020. 7. 8. 개봉하였고 현재 상영 중임. 샤를리즈 테론,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 등이 출연한 영화로 누적관객이 17만명을 넘음.

(만화 '커피&바닐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89572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커피&바닐라'를 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우리나라 대원씨아이에서 2020. 6. 1. 7권까지 출간하였음. '네이버 시리즈'에서 구매하는 경우 권당 30,000원에 이용 가능함.

- 심장섭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89330호~9042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A 위원, B 위원: 안건번호 제2020-89330호~ 90424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심장섭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89330호~ 904 2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89329호~9042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심장섭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13.

분과위원장 대행 심장섭

위원 김연희

위원 최현용